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지방재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시설비 전용 제한을 폐지하고,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예비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자치단체가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출자·출연금의 사전의결 근거 마련, 예산안 첨부서류 목록 정리, 위기관리 지표 변경 등을 통해 법령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혼선이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출자·출연금의 사전의결 근거 마련(안 제29조의2)

출자·출연금 의결 관련 사항은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에 위임된 사항이 아님에도 동 훈령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법령체계 불일치, 법령에 따른 의무적인 출자·출연 및 연례적·반복적 출자·출연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일정기간 정하여 얻을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함

나. 예비비 사용제한 완화(안 제48조)

현행 규정은 업무추진비, 보조금에 대하여 예비비 사용이 불가하나, 광역자치단체가 추가경정예산 없이도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에는 예비비 사용을 허용함

다. 예산안 첨부서류 목록 정비(안 제49조의2)

예산안 첨부서류 목록 중 법과 중복으로 규정된 지방세지출보고서는 삭제하고, 법 제39조제3항에 첨부서류로 규정된 주민 의견서를 첨부서류 목록에 추가함

라. 시설비 전용 제한 폐지(안 제55조)

현행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하여 전용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그 제한을 폐지하여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실 집행 가능한 사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함

마. 위기관리 지표 명칭 및 산식 변경(안 제65조 등)

위기관리 지표 중 ‘통합재정 수지 적자비율’과 ‘지방세 징수율’이 통상 사용하는 지표와 달라 자치단체 등 혼선이 발생, 각 지표를 ‘통합재정 수지비율’ 및 ‘지방세징수액 비율’로 명칭 및 산식을 변경함

바. 기타 조문 정비

- 1) 지방재정법 개정(‘21.1.)에 따른 인용 조문 정정(안 제1조2)
- 2)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24.2., ’25.1.)에 따른 인용 조문 정정(안 제10조)
- 3)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명시(안 제30조)
- 4) 경과규정이 도과된 이월 관련 내용 삭제(안 제58조)
- 5) 지방재정법 개정(‘16.5.)에 따른 인용 조문 정정(안 제64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5. 0. 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32조의2제1항”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제41조제1항제1호가목”을 “제41조제1항제1호가목 내지 다목”으로, “항 제2호가목”을 “조 제2항제1호가목 내지 다목”으로 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출자 또는 출연의 사전의견)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은 법령에 따른 의무적인 출자·출연 및 연례적·반복적 출자·출연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전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얻을 수 있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공익법인의 범위)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이라 함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제48조 중 “위한”을 “위한 보조금 및 자치단체에 대한”으로 한다.

제49조의2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삭 제

6.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립한 주민의
의견서

제55조제1항제1호 중 “기준인건비(같은 규정 제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율범위 중 인건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인건비”로 하고, 같은 항 제2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삭 제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의”를 “기관 또는 시설
의 유지·운영에 드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4조제1항제10호 중 “법 제53조제4항”을 “「지방회계법」 제15조제
3호”로 한다.

제65조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을
““통합재정수지비율””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지출에서 순 수입”을 “수
입에서 순 지출”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가목의 금액을 나목의 금액으로 나눈 비율(이하 “지방세징수액 비
율”이라 한다)

가. 해당 연도 분기별 지방세 누적 징수액(과오납환급금을 차감한
실제 누적 징수액을 말한다)

나. 최근 3년 분기별 평균 지방세 누적 징수액

제65조의2제2항제1호 중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을 “통합재정수지비율이 음의 값이고, 그 값의 절대값”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지방세징수율”을 “지방세징수액 비율”로 한다.

제65조의3제1항제1호 중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을 “통합재정수지비율이 음의 값이고, 그 값의 절대값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지방세징수율”을 “지방세징수액 비율”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을 “통합재정수지비율이 음의 값이고, 그 값의 절대값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지방세징수율”을 “지방세징수액 비율”로 한다.

제69조제1항제1호 중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을 “통합재정수지비율이 음의 값이고, 그 값의 절대값이”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의2(주요 재정사업의 평가)	제1조의2(주요 재정사업의 평가)	제1조의2(주요 재정사업의 평가)		
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평가 대상 주요 재정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또는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① ----- ----- ----- ----- ----- ----- ----- ----- -----	① ----- ----- ----- ----- ----- ----- ----- ----- -----		
제10조(지방채발행 한도액의 산정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방채는 총사업비가 제41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른 기준 미만일 때에는 발행할 수 없다. 다만, 청사 정비기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지방채발행 한도액의 산정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방채는 총사업비가 제41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른 기준 미만일 때에는 발행할 수 없다. 다만, 청사 정비기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지방채발행 한도액의 산정 등) ① ----- ----- 제41조제1항제1호가목 내지 다목 ----- ----- 같은 조 제2항 제1호가목 내지 다목 ----- ----- ----- -----		
② · ③ (생략)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제29조의2(출자 또는 출연의 사전 의결)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은 법령에 따른 의무적인 출자·출연 및 연례적·반복적 출자·출연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u>에 한하여 사전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얻을 수 있다.</u>
<u>제30조(공익법인의 범위)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이라 함은</u> <u>각급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을 당한 공유건물의 복구와 공공청사의 정비 그 밖의 공유재산의 조성·관리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제 교류 증진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u>	<u>제30조(공익법인의 범위)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이라 함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u>
<u>제48조(예비비 사용의 제한) 업무추진비·보조금(긴급재난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의 계상을 할 수 없다.</u>	<u>제48조(예비비 사용의 제한) -----긴급재난대책을 위한 보조금 및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제외한다 -----.</u>
<u>제49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법 제44조의2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u>	<u>제49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u>

음 각 호와 같다.

1. ~ 4의4. (생 략)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
서

<신 설>

6. (생 략)

제55조(예산의 전용) ①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예산은 각
정책사업 내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있다.

1. 인건비[「지방자치단체의 행
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인건비(같은
규정 제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율범위 중 인건비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교육행
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
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총액인건비를 포함한다]

2. 시설비 및 부대비

3. (생 략)

-----.

1. ~ 4의4. (현행과 같음)

5. 삭 제

6.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주민
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
한 주민의 의견서

7. (현행 제6호와 같음)

제55조(예산의 전용) ①-----

-----.

1. -----

----- 기준인건비 ---

2. 삭 제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제5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② (생 략) ③ 법 제5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로서 지방자 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경비는 2 016년 1월 10일까지만 이월할 수 있다. 1.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 영에 드는 경비 2. 일반보상금, 포상금 또는 민 간이전경비 제64조(재정운용에 관한 보고) ① 법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보고하여야 할 재정보 고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9. (생 략) 10. 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재 무제표 11. ~ 13. (생 략) ② (생 략) 제65조(재정분석 및 재정점검) ① ~ ③ (생 략) ④ 법 제55조제2항에서 “채무	② (현행과 같음) 제5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에 드는 -----. <단서 삭제> <삭 제> <삭 제> 제64조(재정운용에 관한 보고) ① ----- ----- -----. 1. ~ 9. (현행과 같음) 10. 「지방회계법」 제15조제3 호-- 11. ~ 1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5조(재정분석 및 재정점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목의 금액을 나목의 금액 으로 나눈 비율(이하 “<u>통합재 정수지 적자비율</u>”이라 한다) 가. 해당 연도 일반회계, 특별 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순 (純) <u>지출에서 순 수입을</u> 뺀 금액 나. (생략) 2. 3. (생략) 4. 해당 연도 분기별 지방세 누 적 징수율(과년도분 과오납환 급금을 차감한 실제 누적 징 수율을 말한다. 이하 “지방세 징수율”이라 한다) 5. 6. (생략) ⑤ ⑥ (생략) 제65조의2(재정진단) ① (생략) ② 법 제55조제3항제2호에서	----- ----- --. 1. ----- ----- “<u>통합재정 수지비율</u>”----- 가. ----- ----- -- <u>수입에서 순 지출</u>---- ----- 나. (현행과 같음) 2. 3. (현행과 같음) 4. 가목의 금액을 나목의 금액 으로 나눈 비율(이하 “지방세 징수액 비율”이라 한다) 가. 해당 연도 분기별 지방세 누적 징수액(과오납환급금 을 차감한 실제 누적 징수 액을 말한다) 나. 최근 3년간 분기별 평균 지방세 누적 징수액 5. 6. (현행과 같음) ⑤ ⑥ (현행과 같음) 제65조의2(재정진단)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재정위험 수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1.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이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2. 3. (생략)

4. 지방세 징수율이 100분의 8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

5. 6. (생략)

③ ~ ⑤ (생략)

제65조의3(재정위기단체 등의 지정·해제의 기준 및 절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

1. 통합재정수지비율이 음의 값이고, 그 값의 절대값이-----

2. 3. (현행과 같음)

4. 지방세징수액 비율-----

5. 6.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65조의3(재정위기단체 등의 지정·해제의 기준 및 절차 등)
① -----

-----.

1. 통합재정수지비율이 음의 값이고, 그 값의 절대값이-----

2. 3. (생략)	2. 3. (현행과 같음)
4. <u>지방세 징수율이 100분의 7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u>	4. <u>지방세징수액 비율</u> ----- -----
5. 6. (생략)	5. 6. (현행과 같음)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한 수준에 해당되지 않으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성 또는 효율성 등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주의단체(財政注意團體)로 지정할 수 있다.	② ----- ----- ----- ----- ----- ----- ----- ----- ----- ----- -----.
1. <u>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이 100분의 25를 초과하고 100분의 30 이하인 지방자치단체</u>	1. <u>통합재정수지비율이 음의 값이고, 그 값의 절대값이</u> ----- -----
2. 3. (생략)	2. 3. (현행과 같음)
4. <u>지방세 징수율이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u>	4. <u>지방세징수액 비율</u> ----- ----- -----
5. 6. (생략)	5. 6.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69조(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 및 해제) ① 법 제60조의3제1항	제69조(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 및 해제) ① -----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하로 악화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u>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u> 2. ~ 6. (생략) ② (생략)	----- ----- ----- -----. 1. <u>통합재정수지비율이 음의 값이고, 그 값의 절대값이-----</u> ----- 2.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연 락 처	(044) 205 - 3711